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서식]

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변경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
			30일

신청인 (대표자)	기관 명칭	사업자등록번호
	소재지 (전화번호: 팩스번호: 전자우편:)	
	대표자	생년월일

지정번호	
지정일자	

변경내역	변경항목	지정받은 사항	변경하는 사항	변경 사유	비고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10조제8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서 2. 변경 근거자료	수수료 190,000원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심사 (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실사)	→	결재	→	지정서 작성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				식품의약품안전처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